

『글로벌미래교육연구』 논문 투고 규칙

[제정 2026. 9. 7.]

제1장 총칙

제1조 (규칙) 글로벌미래교육연구소의 학술지 『글로벌미래교육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칙을 둔다.

제2장 발간

제2조 (발간 일정)

1.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10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투고 시한) 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학술지 수록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 전월 30일로 한다.
2. 마감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3장 투고

제4조 (투고 자격) 연구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1. 논문 투고 시점에 주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 모두 연구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 심사비를 면제 한다.
3. 논문 게재가 확정 될 경우 소정의 게재비를 지원한다.
4. 투고자는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5조 (투고 방법) 완성된 논문은 이메일(E-mail)로 접수한다.

제6조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위임하며,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를 할 수 없다. 또한, 게재된 논문은 영리 목적의 이용, 저작물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는다.
3.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 및 기타 학술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

제4장 논문

제7조 (형식) 논문의 형식(체재와 표기 방법)은 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8조 (분량) 투고 논문은 『글로벌미래교육연구』 규격을 기준으로 20쪽 내외, 서평 및 기타는 10쪽 내외로 한다. 단, 제한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제9조 (개인정보) 심사용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1. 논문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자의 서명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5장 제한

제10조 (접수 제한)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 반영 없이 재투고 할 수 없다. 만약, 심사위원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이 확인 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투고 제한) 투고 논문의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술지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제12조 (게재 제한) 주저자의 2회 연속 게재, 같은 호에 2편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기획특집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회의 회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3조 (기타)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부칙

이 제정 규칙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